

# 선진국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(mis-selling) 대응 사례

2013년 11월 8일  
조사연구실 연구원 서영미

## 1 영국의 주요 불완전판매 사건 및 대응

### 1. 1980년대

- (이슈) 생명보험업권은 영업사원(direct sales force) 중원, 변액보험 중심 신상품 출시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가운데 영업사원에 대한 법적 규제 부재\*, 변액상품의 위험고지 미흡 등이 이슈로 부각

\*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은 자율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은채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

- 또한 '83년 모기지이자세금 감면제도(MIRAS) 도입으로 양로보험 수요가 급증\*하자 판매사들의 과다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판매 권유, 상품 설명 부족 등 부당판매가 확산

\* 신규 모기지에서 양로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'02년 18%에서 '88년 84%로 급증

\*\* 양로보험(mortgage endowment) : 만기보험금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주택구입시 가입하는 보험상품

- (대응) 이에 정부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'88년 상품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 규정(polarisation rule)을 시행하며 독립자문판매업자(IFA,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)\*를 도입

\* 독립자문판매업자(IFA) : 전속자문판매업자와 달리 상품공급업자나 상품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, 판매 등이 가능

- 아울러 전속보험설계사협회(LAUTRO)의 수수료 상한 규정(maximum commission agreement)을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였으며,

협회 자체적으로도 생보사의 준법감시인(compliance officer) 선임 의무 규정을 제정

## 2. 1990년대

□ (이슈) '86년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'90년대 개인연금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며 큰 이슈로 부각

- 보험모집인들은 기업연금\*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수수료가 높은 개인연금의 권유·판매를 일삼았으며, 이에 대해 FSA는 160여만명의 피해자에게 115억파운드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

\* 기업연금 가입시 기업이 보험료 보조를 해주었음

- 여기에 역사가 가장 긴 英 IB였던 베어링스 은행(Barings Bank)의 선물투기거래로 인한 파산, 게젤샤프트(Gesellschaft)사의 선물환 결제불이행 사고 등 연이은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

□ (대응) 정부는 금융허브 위상 강화와 더불어 잦은 금융사고에 따른 기존 감독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금융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 단행

- 이에 '00년 '금융서비스 및 시장에 관한 법률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)을 제정, 금융규제법을 단일화하고 9개 감독기구를 '금융감독청(FSA)'으로 통합

## 3. 2000년대

□ (이슈) 과거 대규모로 판매되었던 양로보험의 만기보험금이 '00년대 들어 자산운용환경 악화로 대출원금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

○ FSA는 보험회사 등에게 위험수준에 대한 적절한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43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약 27억파운드(벌금+손해 배상액)를 지불하라고 판결

○ 또한 최근에도 지급보증보험(PPI, payment protection insurance)\*, 금리 스왑상품\*\* 등 금융상품에 대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

\* 지급보증보험 : 일종의 대출상환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사고,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는 보험

\*\* 금리스왑상품 : 대출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런 시중금리 변동에 헤지할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

- PPI는 '10년말 가입자수가 300만명에 달할만큼 대규모로 판매 되었으나,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이 10만여건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 판매회사측 과실로 밝혀지는 등 분쟁이 지속

- 또한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복잡하거나 불리하게 짠 금리스왑상품을 부당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지금까지 약 120억 파운드를 보상

□ (대응) 정부는 계속되는 불완전판매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'06년부터 소매투자시장의 유통채널 개혁(Retail Distribution Review)\*에 착수하였으며, 새로운 규제안을 '12년말부터 적용

\* 투자형상품(retail investment product)에만 적용

○ 투자자문판매업자는 더 이상 상품제조업자로부터의 수수료 수취가 금지되며,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 수취만 가능

○ 아울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\*하고, 보수체계 공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

\* QCF레벨3→QCF레벨4, 최소 자가자본 1만파운드→2만파운드

## □ (이슈)

- 美 금융회사들은 '05년부터 상품의 위험성, 적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였으며, 이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발생
  - 최근 금융당국은 JP모건의 부동산담보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130억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, 이는 美 단일기관이 낸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\*
    - \* 이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, 웰스파고, 모건스탠리 등 다수의 금융회사들도 소송을 진행 중
  -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도 부실 모기지상품 판매를 통한 투자자 기만을 이유로 파브리스 토르 前 부사장에게 유죄평결을 내림
- 또한 '09년 버나드 메이도프의 500억달러 규모 폰지(Ponzi, 다단계 금융) 사기 등 금융위기 이후 폰지사기가 급증\*하였으며, 복잡한 파생상품\*\* 등의 불완전판매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름
  - \* '09년 미국 다단계 금융사기극은 전년대비 4배 증가한 150여건 적발
  - \*\* '10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의 원리금 수취가 주가와 연계된 역전환채권 (reverse convertible note)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, 상품의 위험성, 수수료체계 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SEC가 불완전판매 조사 진행
- 美 연방법원은 월가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전 재산 압류, 1,700억달러의 벌금과 최대 형량인 징역 150년형을 선고

## □ (대응)

- 정부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'도드-프랭크법(Dodd-Frank Act)\*'을 제정하였으며, 동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다각도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

\* '불공정 금융서비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'가 동 법의 주요 입법목적 중 하나

- 소비자 금융보호국(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) 신설,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등록·공시체계 마련, 파생상품 및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

- 또한 RIA가 주요 리테일 자문판매채널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, 그간 소규모, 다수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이 소홀하여 다수의 불완전 판매, 금융사기 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따라

- 정부는 SEC의 관련예산·인력을 대규모로 확대\*하여 RIA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감독을 강화\*

\* 오바마행정부는 RIA 감독 강화 목적으로 '14년 SEC 예산을 전년대비 27% 확대

\*\* '14년 SEC는 그동안 한번도 금융감독을 받지 않은 4,000여개 RIA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감시감독을 수행할 예정

- SEC는 그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 RIA에게는 신인의무(fiduciary duty)가, 브로커-딜러에게는 이보다 완화된 적합성(suitability) 원칙이 적용되어 온 것에 대해,

- 도드-프랭크법에 따라 브로커-딜러에게도 고객 이익을 최우선 하도록 신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, 이는 업계의 강한 반대와 비용-효과 분석(cost-benefit analysis) 등을 이유로 하원에서 유예